

#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20 · 3 · 27 규칙 제67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이천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3조 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(시행규칙 제24조의 “지정 갱신”을 포함한다) 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1.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

나.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·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

다.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

라.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4.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. 이 경우,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.

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9조(심사·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1. 원안 의결: 각 위원의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

2. 부결: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(이 경우,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)

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**제10조(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)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간사)** 업무연락,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**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표**  
(제9조제1항 관련)

항목	세 부 기 준(안)	배 점
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(40점)	심사자료 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	
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자(법인)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: 부당청구, 노인학대, 재무회계규칙 위반(예·결산 미승인 등), 평가·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<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> ① 대표자(법인)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△ 업무정지일이 총(누적) 180일 이상인 경우(지정취소, 폐쇄명령 포함) 또는 노인학대, 평가·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: 17점 △ 업무정지일이 총 91일~180인 경우 : 감점 12점 △ 업무정지일이 총 31~90일 이하인 경우 : 감점 7점 △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: 감점 2점 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△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: 종사자 인당 감점 2점 △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: 종사자 인당 감점 7점	17
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제공 이력 :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(ex.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)  <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> △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17점 △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12점 △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7점	17
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,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,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	6 (각2점)	

서비스 제공 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(10점)	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	
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(ex. 연1회 이상)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	4
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10점)	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시설 현황 등	
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,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2
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	1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(ex.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,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)	1
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(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, 등기부등본,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)	3
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20점)	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인력 현황 등	
	<input type="checkbox"/>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2
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(포상, 휴가 제도 등)를 마련하였는지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(ex. 공개모집 여부 등)	1
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	2
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의 건강검진, 근골격계 질환 검사(연 1회 이상)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	3
<b>그 밖의 심사 기준</b>		
그 밖의 심사항목(20점)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	5
	<input type="checkbox"/> 욕창 방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여부	5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적 의무교육 이수 계획 수립 여부	5
	<input type="checkbox"/> 응급상황, 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	5
※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<b>80점 이상(예시)</b> 이어야 함		